

불법한 자료제공에 대한 취소청구

독일연방대법원 1983 년 7 월 7 일 판결
- IIIZR 159/82 사건 - (Köln 고등법원)

<적용법조>

독일민법 제 823 조, 제 1004 조 및 독일 연방자료보호법 제 4 조, 제 24 조.

<판결요지>

1. 독일연방자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않는 자료의 제공이라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인
인격권의 침해에는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.
2. 자료전달기관에 의해서 위와 같은 자료의 제공이 행해진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 823 조 및
제 1004 조에 의해서 그 자료제공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.

<사실개요>

원고는 피고인 은행에 대하여, 피고 은행이 「일반신용안전보호회사(Schufa)」에 제공한
자료의 취소를 요구하였다.

1976 년 피고는 B 라는 부인에게 4,800 마르크를 대여하였다.

1977 년 10 월 25 일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원고는 4,500 마르크의 범위 내에서 위 B 부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다.

위 연대보증에 기한 청구가 있자, 원고는 그의 고용주에 대한 보수 및 봉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. 그밖에 원고는 그의 경제상해에 관한 자술서를 비밀로 또한 오로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작성해 주었다.

위 연대보증서에는 원고의 이러한 자료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양도해 주어도 좋다고 하는 아무런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.

1978 년 4 월에 피고는 위 양도 받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 연대보증 사실 및 봉급압류사실을 위 「일반신용안전보호회사(Schufa)」에 통지하였다. 그리고 피고는 나아가서 1979 년 봄에 위 보증채무의 이행도 역시 위 일반신용안전보호회사에 통지하였다.

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를 근거로 해서 위 일반신용안전보호회사(이하 Schufa 로 약칭)는 원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켰다. 즉

『5307 마르크의 보증, 1976 년 7 월 1 일부터 47 회 분할납부, 구좌번호 4253218R(피고들의 성명) 1978 년 4 월 13 일자 3946 마르크의 봉급압류, 1979 년 5 월 28 일 이행완료.』

원고는 Schufa 에게 이와 같은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, 피고에 대해서 위 자료제공의 취소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였다.

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은 위 소를 인용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신청하였고, 원고는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<판결이유>

I

(생략)

II

항소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독일연방자료보호법 제 24 조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자료제공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자료를 전달해준 기관에 대해서 불법으로 제공된 자료의 취소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(Cello 고등법원도 마찬가지로의 견해이다. NJW 1980. 347, 349 참조, 이에 대한 반대견해는 Schuster/simon NJW1980. 1287, 1288 이하 3 항 참조).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아직 없애버리지 않았거나 또는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를 없애버리도록 판결을 받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. 그러나 본건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. 실무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취소청구권을 인정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존재한다. 피해자와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 준 기관사이에 법률행위에 기한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전달기관에 대해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한 것이다.

독일연방자료보호법 제 4 조에서 이와 같은 청구권을 명문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. 왜냐하면 위 규정은 피해자가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률규정에 기해서 가지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(Reh in: Simitis/Dammann/Mallmann/Reh BDSG 3.Aafl. § 4 Rdnr.5).

항소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독일연방자료보호법 제 27 조 제 3 항 제 2 문의 규정으로부터 취소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다.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취소청구권은, 독일민법 제 12 조, 제 823 조, 제 1004 조를 준용하여 불법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어차피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(Simitis a. a. O. § 4R-dnr. 53,54). 연방자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개인에 관계된 자료의 제공은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인 바, 이 인격권은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의 의미에 있어서 「기타의 권리」로서 (Munch Komm/schwerdner § 12 Rdnr. 186,m.w.N 참조) 일반규정에 의한 소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. (특히 Palandt /Thomas 42. Aufl. Einf. vor § 823 Anm.9 참조) 그러나 연방자료보호법에 의해서 특별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그리고 그 자료가 이를 제공받은 사람의 수중에서 아직 소멸되고 있지않은 동안에는, 그러한 장애제거청구권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침해상태의 현존은 원칙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.(Palandt Thomas a. a. O. Amm.9b 참조)

III

항소법원이 실시한 바에 의하면 본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(연방자료보호법 제 3 조 제 1 문 제 2 호) 원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은 위 연방자료보호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.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항소법원은 위 자료의 제공을 위해서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의 존재를 부정하였다. 이와 같은 실시는 상고인의 공격방법과도 서로 저촉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.